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휘관의 소속 장교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에게도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그 사실이 전군에 공표된 진급 예정자로서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진급 예정자가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지기만 하면 유무죄 여부 또는 전역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진급 예정자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의결되기 전에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며,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에 휴직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

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근속진급의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관련하여 현재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근속진급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일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자 확대(안 제33조)

소속 장교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진급 추천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방위사업청장뿐만 아니라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도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사유 등 개선(안 제38조 및 제40조)

1) 종전에는 진급 예정자가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기만 하면 최종적인 재판 또는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원이나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역의결되기 전까지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고, 진급 발령만을 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되어 진급 발령이 보류된

진급 예정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고,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 또는 전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진급 발령하도록 함.

3) 참모총장이 진급 예정자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진급 예정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함.

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

1) 현재 휴직 중인 군인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휴직기간 중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법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대령급 또는 3급 이상 지휘관·부서장·기관장은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각각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선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와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를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역 의결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

한다.

1.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② 참모총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진급 예정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40조 중 “휴직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일이 도래하더라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기소된 경우. 다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만,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경우. 다만, 전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

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4. 휴직한 경우. 다만, 복직한 경우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7장제1절에 제5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검직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법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 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 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u>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 은 사람</u> 2. ~ 6. (생략)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 ----- ----- ----- ----- ----- 1. <u>군사법원이나 법원</u> ----- ----- 2. ~ 6. (현행과 같음)
제33조(선발기준) ① 선발위원회 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 에서 받을 직책을 <u>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는지를</u>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 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 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 3. (생략)	제33조(선발기준) ① ----- ----- ----- <u>수행할</u> <u>능력이 있는지를</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 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 견서를,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 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 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 견서를, 대령급 또는 3급 이상 지휘관·부서장·기관장은 소 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를 각각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
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
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
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
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
을 때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
한다.

③ 선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와 의견서를 제1
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

-----.

1.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기소되
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
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
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 니하기로 의결된 사람에 대 해서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 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발령의 보류) 진급 예정자가 휴직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신 설>

3. _____ 사람이 전역
_____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역 의
결된 경우 <단서 삭제>

② 참모총장은 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긴급 발령 전에 긴급시
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
을 긴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하려면 긴급 예정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
다.

③ -----

보고해야 ----.

제40조(발령의 보류)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진급 예정일이 도래하더라
도 -----.

1.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기소된
경우. 다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
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
만,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중
징계 처분을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
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경우. 다만, 전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4. 휴직한 경우. 다만, 복직한 경
우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
다.

제54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
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
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같은 항 제2
호는 제외한다)·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
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1